



경쟁 미디어렐체제 도입에 있어서의 핵심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실질적인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로운 경쟁체제가 확립되어야 광고산업은 물론 미디어산업도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게 토론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있기 때문에 다수의 미디어렐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렐은 다수 대 다수의 계약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으로 공민영을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완전자율경쟁일 때는 상관없지만 제한적 경쟁체제일 경우에는 미디어렐에 케이블TV 및 기타 다른 미디어와의 크로스 판매 권한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지상파만 대행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본적으로 광고주가 아무리 최상의 미디어플랜을 해도 그 시간을 살 수 없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였던 만큼 공민영으로 구분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미디어렐의 방송사지분 최소화해야

지분 소유 제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방송사와 광고주의 영향력을 상호 차단하기 위한 장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한선교 의원 법안은 방송사 지분을 51%까지 허용하고, 대기업, 정당 등은 지분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51%는 지나치게 과다하며 입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의 지분참여가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동안 언론을 쥐고 있는 매체가 언론을 동원해 압력을 가하는 부정적 피해를 많이 받은 기업 입장에서 방송이 지분의 51%를 갖고 영업을 하는 것은 마케팅 활동으로서 매체구매의 자유로운 컨디션을 깨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분 문제에 있어서 최대

51%까지 허용토록 하는 것은 축소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문별 지분의 차별 규제는 WTO, GATS, 한미FTA협정의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바, 헌법재판소의 유효경쟁 기반 조성의 결정과, 국제협약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위해서라도 해당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송사의 선택권도 존중해 다수의 램에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출자 비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방송사 전체를 합쳐 30% 미만이라면 허용해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었다.

✦ KOBACO 판매기능만, 규제기능은 방통위에서

KOBACO의 위상 및 중소방송 지원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헌법불합치 결정시 KOBACO 독점의 위헌과 실질적인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나 한선교 의원 안은 KOBACO에 공영방송을 대행토록 하고, 광고진흥사업을 허용하는 한편, 방송광고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중소방송 지원 등의 권한을 부여했다. 한편 중소방송사가 원할 경우 정부가 광고판매대행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발전기금을 인상해 KOBACO를 통한 기금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KOBACO 역시 판매유통회사로서 다른 미디어 램과 동일한 역할을 할 뿐 특혜를 부여받아서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권한 부여는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거래 및 시장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수료나 기금 징수

를 통한 취약방송 지원 등과 같은 규제기능은 마땅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야 할 것이며, KOBACO는 순수한 램 기능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토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즉, KOBACO는 판매기능만 하고, 규제, 감독, 공익적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KOBACO가 공익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면 잉여이익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해야지 방송발전기금을 인상해 그 이익으로 공익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종교방송 취약방송에 과도하고 지속적인 지원은 이들 방송의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는 바, 한시적, 부분적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광고대행사수수료의 법제화는 과잉규제

수수료 및 기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한선교 의원 법안은 미디어렐사 뿐만 아니라 광고회사 대행 수수료도 법적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방송발전기금을 현행 6%에서 7%로 상향 조정하고, 미디어렐 기금, 협회비 등 준조세 각출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미디어렐사 수수료율의 상한 하한선을 법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광고대행사에 대한 수수료를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 제정 한도를 넘어선 과잉규제에 해당되며, 대행사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광고주의 계약자유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발전기금을 인상해 취약방송 등을 지원하는 것과 램 출연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준조세에 해당된다며 기금조성을 축소하고 법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현재의 '경쟁 도입'이라는 결정 취지 살려야

결론적으로 경쟁미디어렐체제 도입에 있어서의 핵심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실질적인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로운 경쟁체제가 확립되어야 광고산업은 물론 미디어산업도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게 토론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특히나 이번 경쟁미디어렐 도입이 방송광고 판매시장 대변혁의 근간이 되는 만큼 초석을 잘 놓아야 향후 자율경쟁체제의 확립과 광고시장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수의 미디어렐이 자유로운 시장경쟁체제 하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이들, 이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K A**

〈표 1〉 한선교 의원 '방송법일부개정안' 주요 요지

<p>1. 입법 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법(제73조 등 관계조항을 개정)일부를 개정 - 기존의 미디어렐 관련 근거법인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은 폐기(안 부칙 제3조, 제5조)
<p>2. 미디어렐 도입 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미디어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 공익성, 재정능력, 경영계획 적정성, 방송광고 및 산업 발전 기여여부 등이 주요 허가조건 - 방송사 직접 영입 금지
<p>3. 지분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렐사의 지분은 1인이 최대 51%까지 소유, 다른 미디어렐사 복수 투자 불허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기업 집단과 정당은 지분을 소유 금지
<p>4. 수수료 및 기금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에 대해서는 방송법시행령에 위임 - 미디어렐사에서 징수 대행할 기금 한도를 기존의 6%에서 7%로 상향조정, 기금은 방송사와 미디어렐사가 부담, 기금조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미디어렐사가 전액 부담
<p>5. 한국방송광고공사 폐지 및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로 전환, 방송광고판매대행사협회 설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자본금 1,000억원의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로 전환 -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 하에 정부가 전액 출자, KBS와 EBS의 광고 판매 - 대행공사 내에는 '방송광고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 광고산업 활성화 지원,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 송출 지원, 시청률조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검증기구 운영 등의 업무 담당 - 대행공사 설립자본금을 제외한 기존의 공사자산은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 전환된 방송발전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총괄관리 - 방송광고판매사업 진흥 등을 위한 '협회'를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토록 명시
<p>6. 취약매체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와 미디어렐사가 부담하게 될 기금의 상한선을 1% 인상하여 기금의 징수액을 늘리고, 기존의 KOBACO 자산 중 대행공사로의 출자금 1,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기금으로 전환돼, 취약매체 지원의 재원으로 활용 - 취약매체 지원의 실질 주체는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가 되며, 대행공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방송광고균형발전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며, 최종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지원이 결정